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김보경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30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4. 27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 박주용 의원,  
신동운 의원

## 1. 개정이유

작업단 구성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작업단 구성을 용이하게 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, 작업단 선정절차를 줄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작업단 구성 기준을 5인으로 완화(안 제2조제4호)

나. 작업단 선정 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·의결과정 삭제(안 제17조)

## 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## 4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7인” 을 “5인” 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군수” 를  
“군수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“작업단”이라 함은 근로능력이 있는 <u>7인</u>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작업단체를 말한다.</p> <p>5. (생 략)</p> <p>제17조(작업단 선정) ①(생 략)</p> <p>② 작업단 선정은 <u>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</u></p> <p>③(생 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_____ _____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_____ <u>5인</u> - _____</p> <p>_____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작업단 선정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 <u>군수</u> _____ _____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
□ 「노인복지법(법률)」 (2021.12.21. 일부 개정, 2022.3.22. 시행)

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 지역봉사기관,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